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2월 25일

○ 회부일자 : 1993년 2월 25일

3. 개 정 이 유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임용자격기준 조항을 두고 있어 새로운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개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규채용 업무가 지연되는 등 행정능률의 저해요인이 있어 임용자격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가. 題名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로 함.

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案 제4조 제3항)

다. 학생수련요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함.

라. 시행규칙의 근거를 신설함 (案 제15조)

5. 검토 의견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 題名の 개정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교육감소속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題名에 교육위원회를 삽입시키려는 것이며,
(예 ;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1992. 7. 31, 조례 제1996호)에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명시)
-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별도로 정한기준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육감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빈번한 조례개정 절차 등으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고,
- 또한, 학생수련요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 제4조 제4항에 규정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범위를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인 것이므로 案 제4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 기타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